

우수조달물품제도...현장중심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 경미한 규격 변경은 사후 통보로, 사소한 절차 미준수 등에 '경고' 제도 도입
- 대표·주변기술간 배점 차 축소, 기술 심사에 '정량평가' 항목 신설
- 규격추가 시점 단축 및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 3주간 확대 운영 등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지정된 물품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 '24.12월말 기준 847개사 131,295품목 등록, 공급실적 45,998억원(전체 물품공급의 10.6%)

제도 개선은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1]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 여건을 조성하여 우수제품 업체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한다.

첫째, 경미한 규격 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달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규격 변경이 가능한 기존의 변경 절차를 완화하여 현장 여건에 따른 경미한 규격 변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르는 경우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부품을 단종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규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 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한다.

셋째, 변경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위반 등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사까지 확대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인다.

[2] 우수제품 심사 방식 변경, 정량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첫째,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축소[(일반·가구제품) 12→8점, (성장유망) 10→6점]하여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 회차 심사위원이 판정한 대표기술을 인정하여 신청업체의 심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둘째, 기술 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 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 지표 배점의 10%(성장유망·일반 : 2점, 가구 : 1점)를 정량 점수로 적용하여 기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량평가 도구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핵심기술 특허를 평가하고 신청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5년 4회차 신청부터 적용한다.

[3] 우수제품 지정관리를 개선하여 우수제품 지정·계약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하였다.

첫째,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 추가 확정 후로 단축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 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 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명'기준으로 변경하여 수출실적 평가는 심사 분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또는 보류 결정 시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수시 결정·통보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을 높인다.

넷째, 우수제품 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품질소명자료로 한정하였고, '직전 1년간'의 기산점을 '심사결과 통보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업무혼선을 없앤다.

마지막으로 우수제품 신청 시 제출서류에 최소녹색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품질소명자료로 성능인증서 및 K마크를 제출하는 경우는 관련 규격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신청서류의 검증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 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 책임자 | 과 장 | 김수열 (042-724-7281) |
| | | 담당자 | 사무관 | 최영재 (042-724-7283) |



우수제품 관련 규정 주요 개정내용

'25.4월시행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 여건 조성

| 구분 | 개정 전 | → 개정 후 |
|-----------------------------|--|---|
| 경미한 규격변경 요건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변경) 조달청 사전협의 • (부품단종) 규정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변경) 조달청 사후관리 • (부품단종) 동등이상 대체납품 |
| 경미한 규격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 제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시)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과징금 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시) 규격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의를 거쳐 '경고' 조치 |
| 규격서상 주요자재 제조사 표기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사 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3개사 허용 |

기술 심사의 변별력과 객관성 강화

| 구분 | 개정 전 | → 개정 후 |
|------------------------|---|--|
|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차) 일반·가구제품 : 12점 성장유망제품 : 1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차) 일반·가구제품 : 8점 성장유망제품 : 6점 |
| 대표·주변기술 전회차 판정결과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 전회차 대표기술→금회차 대표기술 * 전회차 주변기술→금회차 대표 또는 주변기술 |
| 기술심사 평가항목 정량평가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차별화 정도) 정성평가 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차별화 정도) 정성평가 90% + 정량평가 10% |

우수제품 지정관리 개선

| 구분 | 개정 전 | → 개정 후 |
|-----------------------|---|--|
| 규격추가 가능시점 단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계약 체결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서 확정 이후 |
| 신인도 심사기준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인도 '수출실적' 기준 : 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인도 '수출실적' 기준 : 품명 |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제품 지정연장 및 연장보류 결정 →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제품 지정연장 및 연장보류 결정 → 수시결정 |